

타행 자동이체 약관

제1조(약관의 적용)

타행 자동이체에 의하여 각종 자금을 정기적으로 이체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거래처”라 한다)와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2조(신청, 변경 및 해지)

- ① 거래처가 타행 자동이체를 이용,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행 자동이체(신규, 변경, 해지)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자 금융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② 타행 자동이체를 변경,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금일 전 제1영업일까지 제1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③ 마지막 이체일로부터 1년 이상 이체처리지 않을 경우 및 수취인 거래 금융기관(이하 “입금은행”이라 한다)의 지정계좌(이하 “입금계좌”라 한다) 부재, 해약 등의 사유로 입금되지 않는 경우 은행은 타행 자동이체를 임의로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지하는 경우 해지사실을 거래처에게 통지합니다.

제3조(타행 자동이체 방법)

은행은 거래처의 타행 자동이체 신청에 따라 지정일에 통장, 수표, 지급청구서 제출 등 별도 청구 없이 출금계좌에서 이체금액을 인출하여 입금계좌로 입금합니다.

제4조(입금가능 예금종목)

입금계좌는 당좌, 가계당좌, 보통, 저축, 기업자유예금과 입금은행이 지정하는 적금 및 신탁계정이어야 하며, 이 외의 계좌로 이체를 원할 경우 거래처는 입금가능한 계좌와 연계하여 이체할 수 있도록 입금은행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
제5조(출금)

은행은 거래처 출금계좌에서 지정일(거래처가 지정한 날이 없는 월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, 거래처가 지정한 날이 휴일 등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지정한 날의 전영업일 또는 익영업일 중 거래처가 선택한 날)에 출금합니다. 다만, 천재지변,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출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제6조(거래불능 및 면책)

출금계좌의 인출가능 예금잔액이 이체금액과 이체수수료를 합산한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(미결제타점권(자기앞수표 포함)은 인출가능금액에서 제외) 및 기타 거래처의 귀책사유(수취계좌 부재, 잔액증명서 발급, 입금한도 초과, 법적 지급제한, 해약 등)로 출금 또는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체 처리하지 않으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거래처의 책임으로 합니다.

제7조(출금우선순위)

이 약관에 따른 자동이체에 의한 출금과 그 외의 자동이체(카드대금결제, 어음수표대금결제, 타 자동이체 등, 이하 “기타 자동이체”라 한다)에 의한 출금이 같은 날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의해 출금이 이루어집니다.

- ① 기타 자동이체에 따른 출금 상호간 : 은행에서 정한 자동계좌이체 약관의 요구불간자동이체 순위에 의해 출금
- ② 이 약관에 따른 자동이체에 의한 출금과 기타 자동이체에 의한 출금 상호간 : 이 약관에 따른 자동이체에 의한 출금시도 시 이체처리가 가능한 경우, 기타 자동이체에 의한 출금보다 우선하여 실행

제8조(출금기준)

이 약관에 따른 자동이체에 의한 출금은 은행의 최종 이체시도 시 예금잔액(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)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, 최종 이체시도 후 입금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

제9조(이용수수료)

이용수수료는 건당 (300)원으로 하며, 이체금액 출금 시 포함하여 출금합니다.

제10조 (계좌이동서비스)

- ① 타행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,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약관을 준용합니다.
- ② 은행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(www.payinfo.or.kr)에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조회 및 해지, 출금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.
- ③ 거래처는 은행 지점, 인터넷뱅킹(스마트폰뱅킹 포함),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(www.payinfo.or.kr), 애플리케이션에서 계좌이동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- ④ 거래처가 은행 지점, 인터넷뱅킹(스마트폰뱅킹 포함),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(www.payinfo.or.kr),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당행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타은행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, 당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 됩니다.

제11조(약관의 변경)

-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,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.
-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. 다만 기존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④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-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.

제12조(다른 약관과의 관계)
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,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, 관련예금 및 신탁약관을 준용합니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17년 04월2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